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A Status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everely Disabled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Ju-Young Park(tuwollip@jj.ac.kr)

요약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생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지정받은 생산시설 403개 중 289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89개소 중 장애인보호작업장(57.1%), 장애인복지단체(29.8%), 장애인근로사업장(13.1%)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총 8,358명으로 1개 시설 평균 28.92명이고, 이중 장애인근로자는 6,119명(평균 21.17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85.8%로 기준인 6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장애인의 시급은 평균 5,235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정품목은 인쇄/광고(18.6%)가 가장 많았고, 식품(14.3%), 사무/문구(12.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매출액은 1개소당 17.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15.7억원이며 이익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받은 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지정을 통하여 매출 향상, 장애인고용 향상,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근무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구매비율 확대(19.4%), 구매가산점 확대(17.5%), 판로지원 확대(10.2%)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중증장애인생산품 | 생산시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for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everely disabled. So, This study analyze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289.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heltered workshop rate is 57.1%, Welfare group of disabled is 29.8%, Work program is 13.1%. And Total worker is 8,358 people(average 28.92 people), worker with disabled is 6,119 people(average 21.17 people). Second, Most of the certificated item is printing/advertising(18.6%) and food(14.3%), office/stationary(12.8%) and so on. Third, Total sales is 17.8 million won and sale cost is 15.7 million won and net income is 2.1 million won. Also, The longer the certificated period, the higher the sales. Forth, It is supported to purchasing improve sales, improv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mprove wage of the disabled, improve working condi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successful of extension of priority purchasing ratio, additional purchasing point, support system of market. Base on this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n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 discussed.

■ keyword : | Products Manufactured by Severely Disabled | Rehabilitation Facilities |

I. 서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은 273만명으로 추정되며 2011년의 268만명에 비해 5만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0%로 2011년 38.5%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도 36.6%로 2011년도 35.5%에 비해 1.1%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6.3%로 2011년 장애인 실업률 7.8%에 비해 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여전히 2014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실업률 3.5%에 비해 장애인실업률은 2.8% 더 높은 수준이다[2]. 또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나, 비장애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높고 일하지 않는 장애인구의 주된 사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경우가 10명중 4명으로 나타난다.

일하지 않는 장애인구는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경쟁고용을 통해 취업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동등한 수준에서 장애 차별 없이 고용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3].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장애를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장을 정책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보호된 환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로 이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있다.

한편,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4], 전체 장애인 취업자 중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3.7%(추정 수 33,225명)이다. 또한, 장애인 실업자 중 향후 직업재활시설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5.1%(추정 수 2,997명),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업재활시설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17.3%(추정 수 34,764명)로 나타나 앞으로 직업재활시설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복지수준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다. 특히, 평균임금은 49만원 수준이고 10명 중 1명은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등 근로장애인의 임금향상이 절실히 필요하다[3].

이렇게 보호된 환경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추진되었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일반적인 환경과 제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5]. 우선구매제도는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 대상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이후 2008년 66개소에 불과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6년 12월 현재 403개소로 늘어났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도 1,320억에서 4,640억으로 늘어 1.02%의 우선구매비율을 보이는 등 법 제정 이후 최초로 법정구매비율(1%)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었다[5]. 우선구매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확대와 성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생산시설의 지정을 위한 사전,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과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신원우[7], 나운환[8], 박하현[9], 이해경[5], 이해경 외[10][11]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들은 주로 제도, 법, 시스템 등 구조적 측면이나 일부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을 통한 매출액, 순

이익 등의 금전적 이익과 손실을 반영하거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생산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생산시설이 장애인생산품을 생산 및 판매를 통한 금전적 이익의 정도,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와 지원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기본 현황파악, 인증현황 파악, 매출현황 및 최대 생산능력 분석, 도움정도 및 욕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1.1 법적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생산품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동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와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동법 제9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3].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근거하는데, 이 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10]. 이렇게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생산품의 판로를 개발하고 판매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과 시설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다[14][표 1].

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기준

영역	심사기준
신청기관 형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 : 10인 이상 * 1개 시설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근로자 비율 :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 70% 이상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 :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근로자 60% 이상 * 단,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은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장애인근로자 참여 근로자 :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50% 이상
직접생산	생산설비의 구비 : 공장 보유, 제품 생산설비 보유 및 가동 여부 등 직접생산 확인 : 직접생산 관련 증빙서류 비치, 생산품 특성과 관련한 전문 기술인력 보유,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공하는 노무용역이 해당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총 403개소로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 248개소(61.5%), 장애인복지단체 101개소(25.1%), 장애인근로자사업장 54개소(13.4%)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소재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18.6%)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인천, 경북, 강원/경남, 전북/충남, 충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모두 경기도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보호작업장은 서울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황

구분	보조직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계	248(100%)	54(100%)	101(100%)	403(100%)
서울	49(19.8%)	6(11.1%)	20(19.8%)	75(18.6%)
경기	46(18.5%)	16(29.6%)	48(47.5%)	110(27.3%)
인천	14(5.6%)	1(1.9%)	5(5.0%)	20(5.0%)
강원	14(5.6%)	4(7.4%)	0(0.0%)	18(4.5%)
경남	13(5.2%)	4(7.4%)	1(1.0%)	18(4.5%)
경북	17(6.9%)	2(3.7%)	0(0.0%)	19(4.7%)
광주	8(3.2%)	3(5.6%)	4(4.0%)	15(3.7%)
대구	9(3.6%)	5(9.3%)	0(0.0%)	14(3.5%)
대전	4(1.6%)	3(5.6%)	2(2.0%)	9(2.2%)
부산	12(4.8%)	2(3.7%)	8(7.9%)	22(5.5%)
울산	7(2.8%)	1(1.9%)	0(0.0%)	8(2.0%)
전남	9(3.6%)	1(1.9%)	2(2.0%)	12(3.0%)
전북	11(4.4%)	2(3.7%)	4(4.0%)	17(4.2%)
충남	15(6.0%)	0(0.0%)	2(2.0%)	17(4.2%)
충북	14(5.6%)	1(1.9%)	1(1.0%)	16(4.0%)
제주	5(2.0%)	3(5.6%)	0(0.0%)	8(2.0%)
세종	1(0.4%)	0(0.0%)	4(4.0%)	5(1.2%)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선행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키워드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선행연구는 신원우[7], 나운환[8], 박하현[9], 이혜경[5], 이혜경외[10][11]의 연구가 있다.

신원우[7]는 ‘장애인생산품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각 생산시설의 생산품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관련된 전문인력의 제능기부 참여를 통한 자체적인 개선노력, 일반 소비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홍보를 제안하였다.

나운환[8]은 ‘AA정책으로써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과 분석을 위해 제도도입 이후 장애인생산품

의 매출정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증가정도, 근로장애인의 임금상승률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본 제도는 생산시설의 마케팅측면,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증가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장애인근로자 임금상승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우선구매의 이행장치, 추진체계, 계약제도, 생산품시설 지원 등 제도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사항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 판매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서 제도적 장치와 이행조치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주관부처에서의 개선, 수행기관에 대한 법률명시 명확화 및 범위확대, 수의계약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박하현[9]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도 분석, 관련 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추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 우선구매명령제도 도입, 온라인시스템 구축, 의무구매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의 역할로는 1·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 두 시설간의 중복되는 역할조정, 두 시설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인력의 전문성 강화, 업무수행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역별 수행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혜경[5]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에서 국내외 장애인생산품 관련 우선구매제도를 살펴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자인 공공기관을 조사하여 구매실태와 구매욕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선구매자인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복사용지, 행정봉투, 문서화일 등 사무용품에 대한 구매실적과 구매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품의 품질과 기술에 대한 불만, 판매자의 자세에 대한 불만, 높은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의 의견도 확인되었다. 주요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장치인 의무구매가 진행되지만, 불이행시 핸디캡이나 초과 달성 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없고, 구매실적과 제품정보 등에 대한 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규제강화,

생산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홍보, 제품에 대한 구매 및 관리 시스템 개발, 가격 및 품질 향상, 판매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해경 외[10]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에서 국내외 생산품우선구매 제도의 법적 기준과 적용대상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급자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수요자인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정부업무평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공공기관 평가지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법정기준 1%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 예규’나 ‘행정업무 관리규정’ 등과 같은 지침의 반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생산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생산시설 지정 기준, 물품 및 용역계약 업무, 직접생산 기준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생산시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은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정부업무평가 측면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가 낮아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의 가산점을 높이고 지표에 대해 적극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해경 외[11]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연구’에서 제도에 대한 분석과 생산시설의 운영현황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의 일반사항, 생산품 관련 현황, 생산능력,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생산시설의 지원 측면, 제도개선 측면, 홍보 측면에서 결과를 제안하였다. 먼저 수요와 공급의 질적인 충족, 생산시설별 생산능력의 편차 최소화, 우선구매 품목의 지정 및 확대, 우선구매 비율의 조정, 생산시설 지정기준 재검토, 생산시설 기준의 재조정을 제안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6개 시·도의 403개소(2016년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 및 Fax를 통하여 조사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1차로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하였고, 추가조사 및 조사표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분석방법은 회신한 생산시설 289개소(회수율 71.7%)를 대상으로 SPSS Win 20.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표 3].

표 3. 조사내용

영역	하위범주
일반현황	· 운영법인 및 생산시설 기본정보 (시설유형, 소재지, 지역특성) · 근로자 현황 (근로직원 현황, 근로장애인 현황, 임금 현황)
인증(지정)현황	· 인증 현황 (시설인증 현황, 제품인증 현황, 지정품목 및 선정 이유, 지정일 및 지정유지 기간)
매출현황 및 최대생산능력	· 매출 현황 · 납품 현황 · 최대생산능력
도움정도 및 욕구	· 지정 전 어려웠던 점 · 지정의 도움정도(매출향상, 장애인근로자 고용향상,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근로조건 개선) · 운영을 위한 요구되는 지원
기타	· 우선구매제도 관련 욕구 및 의견 등

IV. 연구결과

1. 일반현황

1.1 기본현황

조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89개소의 기관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작업장 165개소(57.1%), 장애인복지단체 86개소(29.8%), 근로자업장 38개소(13.1%)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29.1%로 가장 많았고, 서울(18.0%), 부산(6.6%), 강원(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생산시설은 모두 경기도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고,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46.5%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표 4. 생산시설 기본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계	165(100%)	38(100%)	86(100%)	289(100%)
서울	27(16.4%)	6(15.8%)	19(22.1%)	52(18.0%)
경기	35(21.2%)	9(23.7%)	40(46.5%)	84(29.1%)
인천	7(4.2%)	1(2.6%)	4(4.7%)	12(4.2%)
강원	11(6.7%)	4(10.5%)	0(0.0%)	15(5.2%)
경남	7(4.2%)	3(7.9%)	1(1.2%)	11(3.8%)
경북	13(7.9%)	1(2.6%)	0(0.0%)	14(4.8%)
광주	5(3.0%)	2(5.3%)	4(4.7%)	11(3.8%)
대구	7(4.2%)	2(5.3%)	0(0.0%)	9(3.1%)
대전	2(1.2%)	2(5.3%)	1(1.2%)	5(1.7%)
부산	9(5.5%)	2(5.3%)	8(9.3%)	19(6.6%)
울산	3(1.8%)	1(2.6%)	0(0.0%)	4(1.4%)
전남	8(4.8%)	0(0.0%)	0(0.0%)	8(2.8%)
전북	8(4.8%)	2(5.3%)	4(4.7%)	14(4.8%)
충남	9(5.5%)	0(0.0%)	2(2.3%)	11(3.8%)
충북	12(7.3%)	1(2.6%)	1(1.2%)	14(4.8%)

지역특성별로 살펴보면, 생산시설은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50.9%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도시(23.3%), 농어촌 및 산간지역(13.8%), 도농복합지역(10.0%)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55.8%, 근로사업장은 55.3%가 대도시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표 5. 지역특성별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계	165(100%)	38(100%)	86(100%)	289(100%)
대도시	77(47.3%)	21(55.3%)	48(55.8%)	147(50.9%)
중소도시	38(23.0%)	7(18.4%)	28(32.6%)	73(25.3%)
농어촌 및 산간	33(20.0%)	4(10.5%)	3(3.5%)	40(13.8%)
도농복합	16(9.7%)	6(15.8%)	7(8.1%)	29(10.0%)

1.2 근로자 현황

근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근로자를 모두 합한 전체근로자는 8,358명으로 시설당 평균 28.92명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근로자는 6,119명(평균 21.17명), 비장애인근로자는 949명(평균 3.28명), 기타 1,290명(평균 4.4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 기타의 평균인원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순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근로자는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근로자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계	계(명)	4,187	2,374	1,797	8,358
	평균(명)	25.37	62.47	20.89	28.92
장애	계(명)	3,067	1,718	1,334	6,119
	평균(명)	18.59	45.21	15.51	21.17
비장애	계(명)	280	255	414	949
	평균(명)	1.70	6.71	4.81	3.28
기타	계(명)	840	401	49	1,290
	평균(명)	5.09	10.55	0.57	4.46

장애인근로자는 총 6,119명(평균 21.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5,252명(평균 18.17명), 경증장애인 867명(평균 3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85.8%로 나타나 생산시설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중증장애인 6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3,067명(평균 18.59명) 중 중증장애인이 2,879명(평균 17.45명), 경증장애인이 188명(평균 1.14명)으로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93.8%로 중증장애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1,718명(평균 45.21명) 중 중증장애인이 1,450명(평균 38.16명), 경증장애인이 268명(평균 7.05명)으로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84.4%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1,334명(평균 15.51명) 중 중증장애인이 923명(평균 10.74명), 경증장애인이 411명(평균 4.78명)으로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69.19%로 지정기준인 60%보다 높으나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7].

표 7. 장애정도별 근로장애인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계	계(명)	3,067	1,718	1,334	6,119
	평균(명)	18.59	45.21	15.51	21.17
중증장애	계(명)	2,879	1,450	923	5,252
	평균(명)	17.45	38.16	10.47	18.17
경증장애	계(명)	188	268	411	867
	평균(명)	1.14	7.05	4.78	3.0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적 장애인이 4,117명(68.3%)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장애인은

1,942명(31.7%)명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정신적 장애인 2,638명(86%), 신체적 장애인 429명(14%)으로 다른 생산시설 유형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이 많은 비율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은 정신적 장애인 1,043명(60.7%), 신체적 장애인 675명(39.3%)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단체는 다른 시설유형과는 다르게 신체적 장애인이 838명(60.6%)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정신적 장애인은 496명(37.2%)으로 확인되었다[표 8].

표 8. 장애유형별 근로장애인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계	계(명)	3,067	1,718	1,334	6,119
	평균(명)	18.59	45.21	15.51	21.17
정신적 장애	계(명)	2,638	1,043	496	4,117
	비율(%)	86.0	60.7	37.2	68.3
신체적 장애	계(명)	429	675	838	1,942
	비율(%)	14.0	39.3	62.8	31.7

근로장애인 임금을 살펴본 결과, ‘타품목 생산 장애인 근로자’ 6,572원, ‘생산품목 생산 장애인근로자’ 5,235원으로 나타났다. 생산품목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5년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낮은 수준의 시급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의 인가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산품목 생산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은 시설은 장애인복지단체(6,681원)가 유일하였고, 근로사업장(5,434원), 보호작업장(3,488원) 순으로 평균시급이 높게 나타났다[표 9].

표 9. 근로장애인 임금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생산품목	월근무시간	144	176	163	153
	평균시급(원)	3,488	5,434	6,681	5,235
타품목	월근무시간	140	175	172	153
	평균시급(원)	3,214	5,518	20,253	6,572

영업담당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명이 54.7%로 가장 많았고, 2명(24.3%), 없음(7.7%), 3명(6.9%), 4명이상

(6.5%)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사업장은 2명인 경우가, 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단체는 1명이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한명도 없는 경우가 7.7%로 나타나 장애인생산품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낮은 총매출과 이익, 장애인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10].

표 10. 영업담당자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없음	10.4	5.9	3.8	7.7
1명	56.0	26.5	64.6	54.7
2명	24.6	38.2	17.7	24.3
3명	3.7	14.7	8.9	6.9
4명이상	5.2	14.7	5.1	6.5

2. 인증(지정)현황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증」 외 별도의 인증이 없는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24.7%), ISO9001(19.6%), ISO14001(9.4%)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지정(인증)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사회적기업	22.9	31.3	24.3	24.7
장애인표준사업장	1.5	0.0	11.2	4.0
사회적협동조합	0.5	0.0	0.9	0.5
ISO14001인증	10.4	14.1	4.7	9.4
ISO22000인증	3.5	4.7	0.0	2.7
ISO9001인증	18.4	25.0	18.7	19.6
별도인증없음	35.3	9.4	33.6	30.4
기타	7.5	15.6	6.5	8.6

지정품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쇄/광고(18.6%)가 가장 많았고, 식품(14.3%), 사무/문구(12.8%), 생활용품(11.7%), 시설/설비(11.4%), 의류/침구(8.7%), 서비스(8.5%)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인쇄/광고가 25.8%로 가장 많았고, 사무/문구(15.7%), 서비스(13.5%), 생활용품(11.8%) 순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시설/설비가 23.6%로 가장 많았고, 사무/문구(13.6%), 의류/침구(11.8%), 식품(11.8%), 생활용품(10.0%)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산간지역은 식품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광고(18.6%), 생활용품(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지역은 시설/설비가 22.9%로 가장 많았고, 식품(16.7%), 생활용품(14.6%)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2. 지역특성별 지정(인증) 현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산간지역	도농복합지역	계
가구	0.4	3.6	1.7	6.3	2.0
사무/문구	15.7	13.6	5.1	6.3	12.8
의류/침구	8.3	11.8	8.5	4.2	8.7
식품	9.2	11.8	37.3	16.7	14.3
생활용품	11.8	10.0	11.9	14.6	11.7
일회용품	5.2	7.3	6.8	8.3	6.3
인쇄/광고	25.8	8.2	18.6	8.3	18.6
디지털/가전	2.2	4.5	0.0	6.3	2.9
시설/설비	5.7	23.6	1.7	22.9	11.4
공예	2.2	0.9	5.1	2.1	2.2
화훼	0.0	0.9	1.7	0.0	0.4
서비스	13.5	3.6	1.7	4.2	8.5

지정(인증)품목 선정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46.6%),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31.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조사 또는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의견은 4.3%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3].

표 13. 지정(인증)품목 선정이유 분석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쉬운 작업	2.8	0.0	1.9	2.0
많은 수요 기대	51.2	38.2	42.7	46.6
낮은 설비비용	3.6	3.4	4.9	3.9
원활한 물량공급	3.2	2.2	1.9	2.7
장애인 적합업종	26.2	38.2	36.9	31.1
지역적 특성	5.6	6.7	1.9	5.0
벤처마케팅결과	2.8	0.0	1.0	1.8
시장조사/전문컨설팅	3.2	7.9	3.9	4.3
기타	1.2	3.4	4.9	2.5

3. 매출현황 및 최대생산능력

매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매출액은 1개소당 17억 8,959만원이고, 매출원가는 15억7,849만원이며, 매출총이익은 2억1,109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총매출액 6억9,230만원, 매출원가 5억7,983만원, 매출총이익 1억1,246만원으로 나타

났다. 근로사업장은 총매출액 32억6,749만원, 매출원가 28억5,514만원, 매출총이익 3억5,406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총매출액 31억8,698만원, 매출원가 28억5,514만원, 매출총이익 3억3,183만원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은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2015년 매출 현황

구분(천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총매출액(평균)	692,303	3,267,498	3,186,984	1,789,590
매출원가(평균)	579,838	2,913,432	2,855,148	1,578,496
매출총이익(평균)	112,465	354,066	331,836	211,09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정전년도, 지정년도, 지정익년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았다. 지정을 받기 전보다 지정을 받은 이후 모두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지정을 받은 당해연도 보다 익년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 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단체는 마이너스의 손실에서 이익을 산출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표 15].

표 15. 매출액 및 순이익 변화 분석

구분(천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매출액(평균)	전년도	593,807	2,105,571	915,071	903,993
	지정해	623,310	2,533,642	1,577,344	1,145,480
	익년도	852,136	3,222,163	2,637,450	1,626,617
순이익(평균)	전년도	-135,116	78,282	-26,978	-76,414
	지정해	28,830	77,243	26,104	35,672
	익년도	35,237	198,686	79,358	71,966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유지기간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정유지기간별 매출액을 살펴보았다. 평균매출액이 1년 미만은 3억3천만원, 1년 이상은 6억8천만원, 2년 이상은 13억8천만원, 3년 이상은 17억, 4년 이상은 17억2천만원, 5년 이상은 20억6천만원으로 나타나 지정유지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지정유지기간별 매출액 분석

구분(천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1년 미만	222,539	-	423,793	332,314
1년 이상	291,387	345,840	1,265,814	685,825
2년 이상	307,144	1,103,589	2,333,198	1,382,566
3년 이상	253,513	1,209,975	2,570,622	1,705,408
4년 이상	634,439	2,513,226	4,658,155	1,729,959
5년 이상	828,409	4,305,910	5,330,496	2,062,089

납품현황을 살펴본 결과, 직접 납품이 63.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주(36.05%), 판매시설(26.09%), 기타(19.30%)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모두 직접납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작업장은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판매시설을 통한 납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7].

표 17. 납품 현황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직접	59.31	67.44	70.23	63.38
외주	30.89	25.12	54.41	36.05
판매시설	29.07	17.68	9.57	26.09
기타	20.59	6.40	26.83	19.30

생산시설의 최대생산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보유생산설비, 최대생산능력(일), 단가, 연간근무일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항목에 응답한 18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연간 1조 4,428억원이 생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우선구매 목표액인 5,425억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1개소당 34억216만원, 근로사업장은 295억7,078만원, 장애인복지단체는 72억 4,200만원으로 생산능력은 근로사업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최대생산능력 분석

구분(천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계	415,063,808	739,269,566	288,470,237	1,442,803,611
평균	3,402,162	29,570,783	8,242,007	7,927,492

4. 도움정도 및 욕구

생산시설이 지정을 받기 전 시설운영에 어려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매출부진이 27.7%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능력(18.6%), 자금조달 및 장애인고용(12.3%), 품목선정(10.6%), 시장환경 분석(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장애인복지단체는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표 19. 시설운영 어려운 점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품목선정	13.2	10.8	4.8	10.6
매출부진	27.2	26.9	29.1	27.7
장애인 고용	9.8	12.9	17.5	12.3
경영능력	3.7	4.3	4.2	3.9
마케팅능력	19.6	23.7	13.8	18.6
자금조달	10.3	8.6	18.5	12.3
시장환경 분석	9.1	5.4	3.7	7.1
정보수집능력 미흡	5.6	4.3	3.2	4.8
어려운 점 없음	0.7	2.2	3.7	1.7
기타	0.7	1.1	1.6	1.0

생산시설의 지정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도움됨)이 8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총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 자료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표 20].

표 20. 매출향상 도움정도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매우 도움됨	38.8	60.5	57.8	47.2
도움됨	46.1	26.3	26.5	37.8
보통	11.5	7.9	14.5	11.9
도움안됨	3.0	2.6	1.2	2.4
전혀 도움안됨	0.6	2.6	0.0	0.7

생산시설의 지정이 장애인고용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도움됨)이 65.4%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움안됨+전혀 도움안됨) 9.2%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

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81.9%로 나타나 다른 생산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1].

표 21. 장애인 고용향상 도움정도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매우 도움됨	19.1	36.8	47.0	29.7
도움됨	38.3	26.3	34.9	35.7
보통	30.9	23.7	15.7	25.4
도움안됨	10.5	10.5	2.4	8.1
전혀 도움안됨	1.2	2.6	0.0	1.1

생산시설의 지정이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도움됨)이 71.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움안됨+전혀 도움안됨) 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78.1%로 나타나 다른 생산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2].

표 22.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도움정도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매우 도움됨	26.8	34.2	41.5	32.0
도움됨	42.1	36.8	36.6	39.8
보통	25.6	18.4	17.1	22.2
도움안됨	5.5	7.9	3.7	5.3
전혀 도움안됨	0.0	2.6	1.2	0.7

생산시설의 지정이 근무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도움됨)이 60%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움안됨+전혀 도움안됨) 7.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79.6%로 나타나 다른 생산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3].

표 23. 근무조건 개선 도움정도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매우 도움됨	17.7	28.9	38.6	25.3
도움됨	33.5	26.3	41.0	34.7
보통	39.0	34.2	18.1	32.3
도움안됨	9.8	5.3	1.2	6.7
전혀 도움안됨	0.0	5.3	1.2	1.1

생산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우선구매비율 향상이 1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구매가산점 확대(17.5%), 판로지원 확대(13.1%), 수의계약지원 확대(10.2%), 공공기관 인센티브(7.5%), 생산시설 세제지원(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표 24.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계
우선구매비율 향상	18.5	23.4	19.1	19.4
공공기관 구매가산점 확대	16.0	16.2	21.2	17.5
판로지원 확대	16.0	14.4	6.6	13.1
수의계약지원 확대	6.9	13.5	15.4	10.2
구매율에 따른 공공기관 인센티브	6.7	7.2	9.1	7.5
생산시설 세제지원	7.9	5.4	6.6	7.2
공공기관에 생산시설 정보 제공	6.5	4.5	2.5	5.0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확대	5.2	5.4	3.7	4.8
생산시설에 공공기관 입찰정보 정보제공	3.5	4.5	4.6	4.0
생산시설에 공공기관 구매현황 정보 제공	3.1	1.8	4.1	3.2
장애인근로자 인력풀 제공	2.3	1.8	4.6	2.9
예비 생산시설 컨설팅	4.2	0.9	1.2	2.9
쇼핑몰 활성화 지원	2.3	0.0	0.4	1.4
기타	0.8	0.9	0.8	0.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과악과 부석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작업장 165개소(57.1%), 장애인복지단체 86개소(29.8%), 근로사업장 38개소(13.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경기도가 29.1%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강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가 50.9%로 절반 이상이고 중소도시, 농어촌 및 산간지역, 동농복합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생산시설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농어촌 및 산간 등에 생산시설은 부족하고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

에인들은 생산시설에서의 근로가 어렵고 이는 곧 일자리 부족과 취업선택권의 제한과 관련된다.

둘째, 1개 시설 평균 장애인근로자 21.17명으로 중증 장애인은 평균 18.17명, 경증 3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정기준인 중증장애인비율 60%보다 높은 85.8%로 많은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자업장은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고, 장애인복지단체는 신체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시설유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과 관리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시설운영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근로장애인 임금은 평균 시급 5,235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평균 시급 6,681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나타나, 신체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이 시설운영이 아니라 시설 운영을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확대와 임금향상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은 반드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정품목은 인쇄/광고가 가장 많았고, 식품, 사무/문구, 생활용품, 시설/설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인쇄/광고, 중소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은 시설/설비, 농어촌/산간지역은 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많거나 생산이 용이한 품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정품목 선정 이유가 막연한 기대나 장애인 적합직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품목을 지정하기 전 지역사회 수요조사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생산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영업담당자는 1명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없는 경우도 7.7%로 나타나(이 경우 타업무담당자가 영업을 병행하기도 함) 생산품 판매개척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며 이는 곧 낮은 매출과 이익으로 장애인근

로자의 낮은 임금수준과도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총매출액은 1개 시설 평균 17.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15.7억원, 총이익은 2.1억원으로 나타나 1개 시설당 약 2억원의 이익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정유지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생산시설의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지정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생산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으로 우선구매비율 향상, 공공기관 구매가산점 확대, 판로지원 확대, 수익계약 지원 확대 등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는 생산품 판매는 개별시설의 노력으로만 판로를 개척하고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 지원체계 측면, 개별시설 운영 측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구매의무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뿐만 아니라 각종 우선구매제도(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등)보다 최우선하기 위한 법적 효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상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관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후 서서히 법적 구매율을 충족시키는 목표비율제도의 도입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선구매기관에 대한 구매가산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근로장애인의 근로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의 수익 중 일정비율은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임금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익금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사회적 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원체계 측면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춤형 적합품목 선정을 지원하는 것

으로 생산시설의 소재지 특성, 지역특성, 지역내 수요-공급의 적절성, 의무구매기관의 구매욕구 및 구매경향, 판매시장 변화추이, 장애인근로자 특성 및 자원정도 등을 분석하여 수요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 있는 컨설팅 및 시장조사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품판매는 영업활동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전문성 있는 영업 및 판촉활동 담당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판매시스템의 확대하는 것으로 넓게는 일반국민에게도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구축 또는 현재 활성화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시설 운영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시설 지정전과 지정후 단계적 지원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관리로 생산시설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생산품목의 판매현황 점검, 품목의 유지 및 변경 또는 다양화 필요성 검토, 연차적 생산량 및 판매량 확대계획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시설유형 및 특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장애유형을 특화한 시설운영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특화된 품목지정, 시설운영을 통해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생산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 [1]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2] <http://kosis.kr>
- [3]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 [4] 김종미, 김호진, 고재훈, 김성천, 최종철,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 [5] 이해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9권, 제2호, pp.59-79, 2014.
- [6] 박주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732-745, 2016.
- [7] 신원우, “장애인생산품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제26권, 제4호, pp.77-85, 2016.
- [8] 나운환, “AA 정책으로써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재활복지, 제18권, pp.1-21, 2014.
- [9] 박하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0] 이해경, 김동주, 이진숙, 이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 [11] 이해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21권, 제3호, pp.71-90, 2011.
- [12] 고귀염, 박주영, 문지은, 정애진, 김계정, 이석원, 박민정, 201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 [13] <http://www.moleg.go.kr/main.html>
- [14] <http://mw.go.kr>

저자 소개

박주영(Ju-Young Park)

정희원



- 201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 복지학 박사
- 2006년 7월 ~ 2015년 2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직업재활